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
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접도요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(안 제2조제2항)

현행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더하여,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

3. 의견제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현행	개정안	의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

- 전화번호: 044)201-4944, 4942